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61
----------	-----

2014년 12월 17일
교 육 위 원 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년 10월 31일, 서울특별시교육감
- 나. 회부일자 : 2014년 11월 5일
- 다. 상정일자 : 제257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제6차 교육위원회
(2014년 12월 17일 상정, 원안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총무과장 조영권)

가. 제안이유

- 서울시 교육청 및 소속기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요금계산 단위 시간을 변경하고, 요금 감면 대상자 추가 및 부설주차장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제명 변경
 - 제명 중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 시간 주차 기준은 “10분”에서 “5분”으로 요금 변경(안 제4조 별표)
-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안 별표 비고 제2호)
- 감면조항 정비(안 별표 비고 제6호)
 - 장애인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100분의 80 할인
 - 국가유공자 증서 제시 차량 100분의 80 할인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증서 제시 차량 100분의 80 할인
 -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증서 제시 차량 100분의 50 할인
 - 경형자동차(1,000CC 이하)와 저공해자동차 100분의 50 할인
- 감면조항 신설(안 별표 비고 제6호)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사용료의 100분의 30 할인
 -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 부착 차량: 사용료의 100분의 30 할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연주)

-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요금계산 단위시간을 변경하고, 요금감면대상자를 추가하는 등 부설주차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것으로,

- 현재 서울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이용시 시간주차의 경우 10분을 기준으로 그 사용료가 산정됨에 따라 그동안 민원발생의 근원이 되어 왔고, 서울특별시 등 광역자치단체나 강동구, 관악구 등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시간주차의 기준시간을 5분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대체적으로 이용자 중심의 사용기준이 정립되어 가는 추세에 있으므로 바람직한 개정이라 할 수 있음.
- 또한 사용료의 감면과 관련하여 기존의 할인대상에 더하여 다자녀 가정에 대한 다양한 경제적 혜택 및 각종 문화생활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가족친화적인 출산·양육환경을 만들고자 서울시에서 발급하는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및 대기환경 보호를 통한 선진교통문화 확립을 위한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한 사용료 감면도 바람직하다 하겠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의원 전원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을 “서울특별시교육청” 으로 한다.

제4조 별표 “1회 주차시 10분당” 을 “1회 주차시 5분당” 으로 하고, “1급지 800원” 을 “1급지 400원”, “2급지 500원” 을 “2급지 250원”, “3급지 300원” 을 “3급지 150원”, “4급지 200원” 을 “4급지 100원”, “5급지 100원” 을 “5급지 50원” 으로 한다.

별표의 비고란 중 제2호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를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로 한다.

별표의 비고란 중 제6호가·나·다·라·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바목을 아·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 및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 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장이 발행한 증서를 제시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 라.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장이 발행한 증서를 제시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 마.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1,000CC 이하)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 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는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할인한다.
- 사.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으로서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한 차량은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할인한다.
- 아.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감면대상자 및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외부위탁업체와의 주차 계약 조건들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u>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p>	<p><u>서울특별시교육청</u>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 <u>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u> 부설주차장의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u>서울특별시교육청</u> ----- ----- ----- --.</p>
<p>제4조(사용료의 징수) <u>서울특별시교육감</u> <u>소관</u>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징수하는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p>	<p>제4조(사용료의 징수) <u>서울특별시</u> <u>교육청</u> ----- ----- --.</p>

현행

<별표>

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부설주차장 사용료

(단위 : 원-1구획당)

구분	시간주차(1회 주차시 10분당)	정기주차
1급지	800	30,000
2급지	500	30,000
3급지	300	30,000
4급지	200	30,000
5급지	100	30,000

<비고>

1. (생략)

2. 급지는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서 정한 급지를 적용한다.

3.~5.(생략)

6. 다음의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1급 내지 6급의 장애등급자로서 같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수첩을 소지한 자는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제14호와 같은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자로서 동법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는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된 사실이 확인된 자는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라.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된 사실이 확인된 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마.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바.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감면대상자 및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7. 전체 주차면의 40%는 일반이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안

<별표>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단위 : 원-1구획당)

구분	시간주차(1회 주차시 5분당)	정기주차
1급지	400	30,000
2급지	250	30,000
3급지	150	30,000
4급지	100	30,000
5급지	50	30,000

<비고>

1. (생략)

2. 급지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서 정한 급지를 적용한다.

3.~5.(생략)

6. 다음의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장이 발행한 증서를 제시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라.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장이 발행한 증서를 제시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마.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1,000CC 이하)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바. 다등이 행복카드 소지자는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할인한다.<신 설>

사.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으로서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한 차량은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할인한다.<신 설>

아.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감면대상자 및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7. 전체 주차면의 40%는 일반이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